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99 호 2021. 7. 15.(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60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62호[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2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29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2, 행정7122)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7. 12.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배수관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신현동 958-46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45m²
 - 나. 기 간 : 2021. 7. 14. ~ 2021. 7. 16.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새**타즈
 - 나. 주 소 : 울산**시 동해** 14** 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62호

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명촌천, 연암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원에스** 대표이사 **식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로 **-13(*촌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송전선로 매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효문동 820번지

나. 면적

- 당초: 29.5m²

- 변경: 일시 33.8m², 계속 32.6m²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계속 : 2020. 10. 14. ~ 2024. 12. 31.(변경없음)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922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 7. 9.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4명
2. 접수기간 : 2021. 7. 9.(금) ~ 7. 22.(목) 18:00까지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복구 회계담당관 (☎052-241-7312)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
 - 팩 스 : 052-241-8689
 - 이메일 : jini8211@korea.kr
5. 제출서류 : [별지] 신청서 1부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자격요건 :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8. 활동내용
 - 기금의 운용계획 심의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심의
 - 기금의 결산 심의 등
9. 선정결과 :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241-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929호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1. 6. 3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3.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4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joy76@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가족정책과
- 3) 팩 스 : 052-241-7659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을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 ①·② (생략) ③ (생략)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u>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u></p> <p>④ <u>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u></p> <p><u><신 설></u></p>	<p>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u>국장 및 과장</u> 2. ----- -----<u>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 <u>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u></p> <p><u>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u></p> <p><u>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u></p>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